

韓國學校保健協會 現況

事務所：서울特別市 城北區 東小門洞 1街 29番地

電話：94-3872

任 員

會代表理事	李元雨	前 文公部長官, 國會議員, 大學 教授
"	金周成	現 淑明女大 教授
"	朴亨鍾	"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長
"	金命鎬	"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教授
"	權肅杓	"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教授
"	朴煥秀	" 實業人, 言論人
"	柳斗秀	" 韓國學校保健協會 常務理事
"	表大洙	"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學校保健協會 京畿支部長
監 事	金文弘	" 韓國學校保健協會 慶南支部長
"	方壬燮	" 韓國學校保健協會 江原支部長

市 道 支 部

支 部	支部長 및 副支部長	事 務 所	電 話
서울	李根泰	서울특별시 城北區 東小門洞 1街 29	94-3872
부산	李鍾浩	釜山直轄市 西區 大新洞 2街 426	43-2125
경기	表大洙	서울특별시 西大門區 忠武路 2街 16-12	72-8268
강원	方壬燮	春川市 中央路 2街 42의 99	2878
충북	李明和	清州市 榮洞 87(충북교육회관內)	6453
충남	金義大	大田市 仁洞 85번지	3-4833
전북	宋祥奎	全州市 高士洞 1가 417	2-5254
전남	林善鎬	光州市 東區 錦南路 5街 62	3-6620
경북	鄭鎬康	大邱市 南區 大鳳洞 283	4-5362
경남	金文弘	釜山直轄市 西區 忠武洞 4街 26	23-4982

'75年度 協會動靜

◇ 代議員總會 및 支部長會議 開催 :

75. 2. 6. ~ 6. 14., 8. 22.

◇ 理事會議 開催 : 75. 2. 4. ~ 6. 12.

◇ 國際學校保健協會 (불란서 파리所在) 加入

◇ 75年度 當協會 會員 加入 : 346名

◇ 75年度 實施事業 概要 :

- ① 學校保健示範事業—各市道마다 于先 1個
校式 學校 保健協力校를 指定하여 75年度
에는 身體檢查, 機材, 寄生虫 스퀘이드를

無料供給과 同時에 학교 保健指導를 協
議키로 함.

② “학교보건”誌 刊行 配布 : 全國 各級 학교
및 關係機關 會員 등에 無料配布

③ 學生健康記錄簿 調査 研究結果를 文教部
에 提出

④ 학교 보건 세미나 開催 : 75. 8. 22. (忠北
속리산에서)

⑤ 學生血液型檢查實施(75年 1學期分) :
Rh(-)陰性者 400餘名 나타남.

社團法人 韓國學校保健協會 定款

1955年12月 7日 認可(문화계3042호)
1970年 4月13日改正(문교부체욱1732-273)
1972年 9月25日改正(문교부학체1732.53-1535)
1973年 3月22日改正(문교부학체1055)
1974年 2月28日改正(문교부학체1732.53-45)
1975年 3月26日改正(문교부학체1732.53-)
1975年 7月15日改正(문교부학체1732.53-)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韓國學校保健協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하고 外國에 對하여는 Korean School Health Association (略稱 KSHA)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學校 保健의 增進과 體位 向上을 圖謀하고 保健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學校 保健의 增進과 體位의 向上에 關한 調查研究
2. 學校 保健에 關한 弘報 및 教育의 實施
3. 學校 保健奉仕 特히 各種 保健事業(寄生虫 驅除, 血液檢査 및 其他)의 實施
4. 學校 保健要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 및 訓練의 實施
5. 學校 保健 및 體育에 關한 敎材資料, 機械, 醫藥品의 推薦 및 斡旋供給
6.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4條(住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城北區 東小門洞 1街 29番地에 둔다.

第5條(支部) 本會에는 必要한 地域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2章 會 員

第6條(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와 本會에 加入을 願하는 各級 學校에 在職中인 養護敎師로서 本會 所定의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會長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第7條(會員의 權利義務) 本會의 會員은 會費를 納入하고 이 定款 및 이 定款에 依한 規則이 定하는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第8條(會員의 脫退) 本會의 會員은 自由로 脫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納入한 會費나 前條의 規定에 權利는 脫退한 날로부터 消滅된다.

第9條(會員의 除名) ①本會의 會員인 者가 本會의 目的에 違背되는 行爲를 하거나 本會의 威信을 損傷시키는 行爲를 하였을 때 其他 이 定款에 定한 義務를 履行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會長이 除名할 수 있다. ②會員의 除名에 있어서는 前條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條(名譽會員) 本會의 事業에 현저한 功獻을 한 者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名譽會員으로 推戴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11條(任員의 種類와 定數) 本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 1人, 副會長 1人, 理事 7人 乃至 9人(會長, 副會長 包含) 監事 2人

第12條(任員의 任期) 前條 規定에 依한 任員의 任期는 會長, 副會長, 理事는 4年 監事는 2年으로 하되 다시 選出될 경우에는 連任할 수 있다.

第13條(補闕任員) 前條의 任員의 任期中에 缺員이 있을 때는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補選하고 그 補選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4條(任員의 選出方法) ①任員은 代議員總會에서 選出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任期 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에서 議決하여 監督廳에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理事會의 議決은 在籍理事 3分の 2 以上이 贊成하여야 한다.

第15條(會長 및 副會長의 選任) ①會長과 副會長은 會員中에서 代議員 總會가 在籍代議員數 過半數의 贊成으로 選出하여 監督廳의 認可를 받아 就任한다.

②前項의 會長 및 副會長의 選出에 있어서 過

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 投票를 하여 多數 得票者를 選出된 者로 한다.

第16條(會長 및 副會長の 職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轄하며 理事會를 主宰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또는 會長의 命에 依하여 會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17條(理事의 職務)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理事會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을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第18條(職務代行) ①會長, 副會長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會長, 副會長이 미리 指定한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會長, 副會長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第1項에 準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되 그 闕位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第15條에 定한 節次에 따라 會長, 副會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19條(監事의 職務) 監事は 다음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備한 點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이를 理事會總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是正치 않을 때에는 監督應에 報告하는 일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總會理事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第20條(名譽會長 및 顧問) ①本會에는 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名譽會長은 理事會에서 議決하여 代議員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本會에는 會長의 諮問에 應하도록 하기 위하여 顧問 若干人을 둘 수 있다.

③前項의 顧問은 理事會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第21條(專門委員) ①本會에는 必要에 따라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②專門委員은 理事會의 推薦으로 委囑한다.

③專門委員은 理事會에 所屬하여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各種 事業의

推進에 대한 企劃調査 研究를 한다.

第4章 代議員 總會

第22條(代議員 總會의 構成) ①代議員(以下 “總會”라 한다)은 다음의 各號에 의한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1. 本會 會長 및 서울特別市, 釜山市, 各道の 支部長
 2. 會長이 委囑한 11人 以內의 代議員
- ②前項의 代議員의 委囑에 關하여는 本會 規則으로 定한다.

第23條(機能) ①總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選出에 關한 事項
2. 定款變更 및 本會 解散에 關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
4. 事業計劃의 承認
5. 其他 重要事項

②前項의 總會의 權限은 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한 事項은 委任할 수 없다.

第24條(總會의 召集) ①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되 定期總會는 每 會計年度 終了後 1個月 以內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수시로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3分の1 以上 代議員 4分の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②前項의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③會長이 第1項의 總會를 召集함에 있어서는 會議案件을 明記하여 開會 7日 前에 各 代議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하다고 認定되는 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하되 代議員이 開會 1日 前까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④總會는 前項의 通知事項에 限하여 決議할 수 있다. 다만 出席한 代議員 全員이 附議할 것을 贊成하는 案件은 通知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決議할 수 있다.

第25條(議決定足數) 總會는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한 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26條(議決權의 委任) ①總會의 議決權은 他代議員에게 委任하여 權限을 行使케 할 수 있다.

②前項에 의하여 議決權을 委任받은 代議員은 每總會 때마다 그 委任狀을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27條(總會 召集의 特例) ①民法 第67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總會 召集의 要求할 때에는 會長은 그 召集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總會 召集權者가 關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하므로써 總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2分の1 以上 또는 代議員 3分の1 以上の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前項에 의한 總會는 出席代議員中 最年長者의 司會 아래 그 議長을 選出하여 會議을 進行한다.

第28條(總會議決 除斥事項) 議長 또는 代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관한 事項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受하는 事業으로서 議長 또는 代議員 自身이 本會와 利害關係가 있는 事項

第29條(任員 등의 總會出席) ①理事, 監事, 名譽會長, 專門委員 등은 總會에 出席하여 議長의 承認을 얻은 意見を 陳述할 수 있으나 議決에 參加할 수 없다.

第30條(不信任決議) ①總會는 在籍代議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서 總會가 選出한 任員에 대하여 不信任 決議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信任 決議를 받은 任員은 지체없이 解任되고 그 뜻을 監督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5章 理事會

第31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運營에 관한 事項
3. 豫算, 決算書 作成에 관한 事項
4. 總會에서 委任 받은 事項
5. 이 定款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6. 其他 業務執行에 관한 重要事項

第32條(理事會의 召集) ①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理事 3人 以上 또는 代議員 10人 以上이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要求할 때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 前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3條(理事會 議決 定足數) ①理事會는 理事 定足數의 過半數가 出席하지 아니하면 開會하지 못한다.

②理事會의 議事는 이 定款에 特別히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出席한 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否決로 본다.

第34條(書面決議) 會長은 附議案件의 內容이 輕微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召集하지 아니하고 書面決議를 할 수 있다. 다만 過半數 理事가 正式 回附할 것을 要求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第35條(準用規定) 第24條 第2項 및 第4項 第26條 第27條 第28條는 理事會에 準用한다. 이 경우 總會를 理事會로 代議員을 理事로 한다.

第6章 事務局

第36條(設置) ①本會의 事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②事務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本會 規則으로 定한다.

第37條(常務理事) 事務局의 運營監督을 위하여 本會에 常務理事를 두되 常務理事는 理事中에서 理事會의 推薦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第38條(職員의 任命 등) ①事務局의 職員은 理事의 推薦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②常務理事 專門委員 및 事務局의 職員은 有

給으로 하되 그 給與額과 支給方法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따로 規則으로 定한다.

第7章 地方組織

第39條(支部의 名稱 및 住所)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各道의 支部 名稱은 社團法人 韓國學校保健協會 ○○(市) 道支部(以下 支部라 한다)라 한다.

支部事務所를 아래의 같이 設置한다.

서울特別市 城北區 東小門洞 1街 29番地

春川市 中央路 2街 55番地

淸州市 北門路 2街 116番地 187

大田市 仁洞 85番地

全州市 西老松洞 648番地의 19

光州市 忠壯路 5街 40番地

大邱市 南區 大鳳洞 283番地

釜山市直轄市 西區 忠武洞 4街 26番地

第40條(支部長) ①支部에 支部長을 둔다.

②支部長은 當該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道教育委員會의 教育監의 推薦에 의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任命한다.

③前項의 教育監의 推薦이 없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推薦하여 會長이 任命한다.

第41條(職員) ①支部에는 事務長과 醫師를 둔다. 副支部長 1人, 參事 若干人, 書記 若干人, 藥師 醫療技士 若干人을 둘 수 있다.

②前項의 職員은 有給으로 할 수 있다.

第42條(支部處務規程) 支部의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支部處務規程으로 定한다.

第8章 資產 및 會計

第43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 收益金으로

充當한다.

1. 會員의 會費
2. 政府의 補助金
3. 公共團體 또는 一般의 寄附金 또는 贊助金
4. 事業收益金
5. 其他의 收入

第44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第45條(歲入歲出豫算) 本會의 歲入歲出豫算은 每會計年度開始 1月 前까지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46條(財務會計規則) 本會의 財務會計에 관하여는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文教部令 第170號 1966. 3. 16)에 準하여 理事會에서 따로 定한다.

第9章 解散 및 定款改正

第47條(解散) ①本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議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하여 文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②本會는 文教部長官의 設立許可取消가 있으면 解散한다.

第48條(解散할 경우의 財産歸屬) 本會가 解散할 때에는 그 殘餘財産은 監督廳의 承認을 얻어 本會와 類似한 團體 또는 國家에 寄贈한다

第49條(定款의 改定) 本會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分の2 以上 總會에서 在籍代議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하여 文教部長官 許可를 얻어야 한다.

附 則

①(施行細則) 이 定款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議決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 規則으로 定한다.

②(定款効力) 이 定款은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効力이 發生된다.

학 교 보 건

創刊號

1975年 11月 25日 發行

登錄番號 바-582

登錄日字 1975年 9月 1日

發行兼 李 元 兩

編輯人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學校保健協會

서울特別市城北區東小門洞 1街 29

電話 ㉠ 3872

印刷所 天豐印刷株式會社

<非賣品>